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- 사업명 : 2023년 제1차 법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4 사업
- 발주기관 :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
-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(주)
- 대상 물품명 : Hitachi Vantara VSP 5500 190TB 증설, Hitachi Vantara VSP 5500 190TB 증설,
Hitachi Vantara HNAS 5200 & Hitachi Vantara VSP F700 100TB 증설,
Hitachi Vantara HNAS 5200 & Hitachi Vantara VSP F700 100TB 증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- ② 위 물품 중 “제조사(또는 공급사)”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격에 따른 “제조사(또는 공급사)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“발주기관”과 “제조사(또는 공급사)”가 협의하는 금액 2,890,000,000원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“제조사(또는 공급사)”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“제조사(또는 공급사)”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3년 3월 일

“발주기관명”

국가정보자원관리원



“제조사 또는 공급사명”

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(주)

